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의 방향”에 대한 토론

박성익(서울대학교 교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의 시행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영재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유관부처와 시도교육청, 영재교육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도 영재교육실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제정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영재학회에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한 오늘의 토론의 장은 학술세미나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책토론회이거나 공청회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들께서 준비한 “주제발표내용”은 비록 영재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미나이지만, 영재학회 회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영재학회 차원의 공식적인 견해도 아니며, 학회회원의 일부(발표자들께서는 대표적 전문가팀이라고 자칭함)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시행령 제정방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주제발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며, 이러한 주제발표내용을 토대로 시행령의 제정방향을 앞으로 깊이있게 논의하고 탐색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제발표내용은 토론을 위한 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언론방송기관에서 오늘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내용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오늘의 토론회가 끝난 후,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제정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 때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일이며, 또한 정부부처나 각급학교 그리고 학부모 등이 영재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발표자께서는 제1장에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재의 육성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간단히 언급하였고, 제2장에서는 영재교육체제의 기본방향으로서 영재교육기관 관련체계와 영재교육체계 변화에 따른 보완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1999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영재교육진흥법”을 간략히 요약하였고, 제4장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제정을 위한 주요과제로써 (1)영재교육진흥위원회 문제, (2)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문제, (3)영재교육기관의 설립운영, (4)이수과정과 AP과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발표자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1장 서론의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로써 특이한 내용이 없지만 공감하며, 그리고 제3장의 영재교육진흥법을 요약정리 하여 놓은 부분은 토론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청중들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론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과 관련된 주제발표내용 중에서 제2장과 제4장에 대하여 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발표자께서 제2장과 제4장에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는 그 타당성이나 근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소 있다. 그리고 주제발표내용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운영전반에 대한 체계적, 조직적,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또한 그 실현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그 이유는 아래의 토론내용에서 일부 밝혀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발표자께서 제시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토론자는 발표자의 견해와 매우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제발표자의 내용중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난 후,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는 영재교육체제의 기본방향과 시행령제정의 방향을 제안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발표자께서 언급하고 있는 영재교육체제의 기본방향과 시행령의 제정방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요컨대,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영재교육 관련기관 운영체제”는 방만한 국가적 영재교육운영체제를 이루게 되므로 영재교육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상실, 현실성의 부재, 현존 일반 초중등 교육체제와의 비형평성 및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교육계 전반에 혼란초래, 운영의 효율성 상실, 국가재정의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재학교의 설립과 소속은 해당 관계부처가 관장(예,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하도록 하고, 종류는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4개 분야로 하고, 그 수는 시도별로 1개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 적어도 64개의 국립영재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재교육 기관 운영체제는 일면으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고 적극적인 사고라고 토론자도 생각하면서도, 깊이있게 따져보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실을 감안해 보고, 단기, 장기 영재교육정책의 구현을 검토해 볼 때, 도저히 현실성이 없고 영재교육정책문제로 사회적으로 한국교육이 또 한번 소용돌이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영재학교의 학생들을 대학교육과 여하히 연계시킬 수 있을지도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한편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 규정되어 있듯이, 영재교육의 실시여건을 충분히 갖춘 사립학교에서 국가에 영재교육기관 지정을 요청할 때, 거부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도 영재교육학교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영재교육고등학교로써 전혀 손색이 없는 사립학교도 영재학교지정을 준비중에 있고, 다수의 사립학교가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을 대비하여 영재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물결을 여하히 잠재울 수 있을까? 자칫 잘 못하면,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비추어 볼 때, 전국이 영재학교설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는 다수의 영재학교 설립보다는 명실공히 영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수의 영재학교의 설립조건과 알찬 운영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내실있는 영재교육운영체제가 확립되고 영재교육운영에 대한 Know-How를 좀더 축적한 후에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발표자께서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국립영재교육원의 설립도 4개 분야(즉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 그 또한 관련 부처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리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70개가 설립되어야 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각 부처 산하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간에 정책방안의 비밀관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에도 힘든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영재교육연구원의 경우에도 부처별로 독립된 4개의 정부출연 기관으로 설립하며, 그 설립도 각 부처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영재교육연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연구회를 부처별로 신설하여 총리실 산하에 영재교육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사실, 영재교육연구원의 기능은 영재연구, 영재교사연수, 영재교육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상호 통합적 유기적 협력연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간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처별로 독립된 영재교육연구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로, 발표자께서는 영재교육원의 설립과 소속은 해당 관계부처가 관장하도록 하고, 종류는 4개 분야(인문사회, 과학, 예술, 체육) 그 수는 시도별로 1개씩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전국에 적어도 64개의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덧붙여 전국의 15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시킬 것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분야의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굳이 영재교육원의 설립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진흥법 제8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익법인은 어떤 기관이라도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설립조건만 충분히 갖추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명분도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영재교육 분야가 마찬가지로이지만, 현재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원으로서의 설립인가를 검토해야 하며, 일반 대학이나 연구소 등 공익법인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의 설립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인가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영재교육진흥법에 기초하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표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표자들은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4개 분야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각 관련 부처별로 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모법과 시행령은 달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재교육진흥법을 다시 국회에서 재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진흥법에 기초하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발표자들께서는 일관성을 상실한 제안을 도처에서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영재교육진흥법 제7조에 영재학급의 설치도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표자는 교육청별로 영재학급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공익법인은 모두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표자들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고 있다. 발표자들의 주제발표내용에 이런 오류가 한 두개가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이미 1999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영재교육진흥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넷째로, 발표자께서는 일반대학에서의 학·석·박사과정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본 세미나가 초·중등학교 수준의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자는 주제발표의 내용체계에 대하여 맥락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토론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영재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영재교육체제의 기본방향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의 정책방향이 다음과 같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토론자가 생각하는 영재교육체제의 기본방향.

- 1)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첫째로, 영재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설립하되, 당해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평가하여 재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과학분야 영재교육을 현재 15개 과학영재센터로만 대체하도록 한 것은 타 대학 및 기존 운영 중인 각 시·도 교육청 과학교실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기회를 부여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영재학교의 운영.

첫째로, 국립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으로 1개교를 신설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 정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국립영재학교는 분야별 학교보다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분야 영재들을 한 캠퍼스에서 간학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영재성의 계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정책(예, 과학예술고등학교: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에서도 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둘째로, 기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예,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를 영재학교로 지정·전환하여 국립으로 할 경우 일반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며,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육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려다 한국교육 전체를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공·사립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영재학교를 교육부외의 타 부처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영재교육정책의 시행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다. 주제발표자들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급에서 과학영재교육을 부분적으로 예전부터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교육부를 배제하고 어떻게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영재교육문제(과기부에서는 비단 과학영재교육의 문제에 국한하지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상식을 벗어난 제안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예술, 체육분야의 영재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운영토록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기대하건대,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부처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분야별 영재교육을 여하히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기획, 조직, 조정, 집행, 평가기능을 교육부(또는 교육부총리)에 부여하는 것이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3) 영재교육연구원

첫째로, 영재교육연구원을 인문사회, 과학, 예술, 체육 등 4개의 독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multi-disciplinary 혹은 inter-disciplinary R & D가 힘들고, 그리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과도 배치되며, 4개 기관을 설립할 경우 그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어렵고, 방만한 운영으로 국가적 예산낭비가 불가피해 질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전혀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로, 영재교육연구원은 기존의 정부출연기관 중 영재교육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신설 할 경우 교육부 소속으로 1개 기관을 설립하여 영재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자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연구소의 연구활동은 당해 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토론자가 생각하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의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안).

1)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에 1개 기구로 설치하되 위원은 영재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원의 설립 및 폐지보다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영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국립영재학교는 인문사회, 과학, 예술분야를 함께 교육하는 종합영재학교

1개교를 설립하고, 그 소속은 교육부로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현재도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모든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교육부 산하의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만약에 발표자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같이, 과학기술처에서는 과학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체육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이 어렵고, 대학과의 연계문제도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장학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에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현재 국립 해사고등학교의 경우에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운영과 장학은 교육부에서 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급간의 연계성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영재학급의 개념은 각급 학교에서 영재학생을 위한 학급을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째로, 영재교육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영재교육원”이므로, 과학분야 영재교육원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산하에 개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행 초·중·고 영재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과학영재센터가 개설되기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영재교육을 운영·실시해 오고 있다.

넷째로, 국립영재교육연구원의 설립형태는 교육부 소속으로 1개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현재 정부출연기관 중 영재교육연구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관에서는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영재교육의 정책과 실천방향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영재교육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가 과학, 인문사회, 예술, 체육 등의 전 분야의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하면서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연구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등의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유관부처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등 전 분야의 영재교육을 교육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진 외국(예,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영재교육을 총괄·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